

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
			7일

•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① 건축주

성명(법인명)

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
주소

(전화번호:)

전자우편 송달동의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.

[] 동의함

[] 동의하지 않음

건축주 (서명 또는 인)

전자우편 주소 @

② 공사 개요

대지위치

지역지구

층 수

지하 지상

대지면적

m²

건축면적

m²

건축연면적

구 조

용 도

건축허가일 /허가번호

③ 설계자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자격번호

협회 회원번호

사무소 명

신고번호

사무소 주소

(전화번호 :)

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

[]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)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

[]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(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)가 설계한 건축물

[]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

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.

건축주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

3.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

가. 설계공모 방법

나.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

다. 설계지침서

라.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

마.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증질지(80g/㎡)]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